

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# 제안 설명

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 
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 
29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신  
「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 
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개정안은 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  
을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 
근거를 마련하고,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  
구 공유사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안 제7조 2항을 신설하여 자치구 공유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하도록 하였고, 안 제9조의2에서 새로운 공유모델 발굴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,  
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감사합니다.